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74

발의연월일: 2022. 10. 21.

발 의 자:신동근・김태년・한병도

강병원 · 신정훈 · 김주영

김영진 · 김정호 · 정일영

이원택 · 조승래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기업 및 자본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임.

그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당수는 소수 대표법인이 전체기업집단의 자산 및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해당 법인을 통한 투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협력지원금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나머지 법인들은 주력기업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운송 및 유통등을 담당하면서 적극적인 투자 등이 어려운 실정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법인들의 경우 이미 특수관계법 인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 받고 있으며, 특히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규모상 중소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들의 경우 여타 중소기 업들이 누리는 세제혜택에서도 배제되는 역차별을 겪고 있음. 이에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을 2025년 말로 3년 연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기준으로 미환류 여부를 판단하여 기업집단의 초과환류 발생 시 소속 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며, 기업집단의 초과환류액과 소속 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2제1항제2호·제2항제1호)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2제1항제2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로, "법인"을 "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에 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 경우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초과환류액은 소속 법인의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과 상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 의3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
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을 위한 과세특례)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	
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	
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	
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	
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	
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	
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	
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	
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	
른 <u>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u>	<u>상호출자제한기업집</u>

속하는 법인 <단서 신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 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 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 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 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 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 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 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 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 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법인.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해당 사업연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에 제 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 경우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초과환류액으는 소속 법인의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과 상계할 수 있다.

②

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 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가. ~ 다. (생략)
- 2. (생략) ③ ~ ⑩ (생략)

1 <u>2025년 12월 3</u>
1일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